

제안 주제 : 지역아동센터 시설 기준별 정원 변경 및 개선 요구

현재	개선 요구안
<p>1) 시설 기준</p> <p>가)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·조리실·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,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.5제곱미터 이상이고,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. 다만, 집단지도실은 2개 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</p> <p>※ 전용면적이란 : 타 복지사업, 타 기관,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. 전용면적 산정 시 사무실·조리실·식당 및 집단지도실만 산정하며, 이외의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</p>	<p>1) 시설 기준</p> <p>가)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·조리실·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,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.5제곱미터 이상이고, 아동 1명당 전용면적 4.2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. 다만, 집단지도실은 2개 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</p> <p>※ 전용면적이란 : 타 복지사업, 타 기관,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. 전용면적 산정 시 사무실·조리실·식당 및 집단지도실만 산정하며, 이외의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</p>

□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면적은 영유아 1명당 **4.29m² 이상 (1.3평)**으로 하고 있음.반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·고등학생의 성장기에 있는 이용자들의 신체 크기가 더 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다 적은 3.3m²(1평, 영유아 대비 약 76%에 해당)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임.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신체 크기나 활동반경의 범위를 고려할 때 어린이집보다 더 크게 산정할 필요성이 있음. 특히 중·고등학생이 다수 이용하는 경우 시설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며 실제로 매우 복잡하고 좁은 것이 사실 임. 따라서 어린이집 기준 4.29m²(1.5평)보다 그 이상이어야 함.예시) 1. 현 82.5m²의 경우 1명당 3.3m²이므로 25명이 기준이 됨.**제안의 경우 1명당 4.29m²이므로 19명이 기준이 됨.**

※ 시설 기준 및 법정 종사자 수

현재		개선 요구안	
10~19인 이하	2명	8~15인 이하 ¹⁾	2명
20~29인 이하	2명	16~22인 이하 ²⁾	2명
30인 이상	3명	23인 이상	3명

* 면적당 아동의 수와 현재 종사자 수를 제안한 면적 대비 대조하여 작성

아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시 소멸 현상 등, 농산어촌 등은 더욱 조정이 필요함.

1) 기존 82.5/3.3=25명, 개선 83.5/4.29=19명 | 3.3×19명=62.7m² 개선 62.7/4.29=14.6 곧 **15명**2) 3.3×29명=95.7 | 95.7/4.29=**22명** 3.3×30인=99 | 99/4.29=**23명**